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80

발의연월일 : 2021. 4. 19.

발 의 자: 강선우·강준현·남인순

맹성규・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 이해식 · 조오섭

최종윤 · 허종식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는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
	애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
	위탁을 하는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u>한다.</u>